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Marital Conflicts of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광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신 경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 양 성은

Gwangju YWCA Family Center
Counselor : Shin, Gyoung-Hee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ang, Sunge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점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cas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processes of marital conflicts among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19 Korean men and their 19 Filipino spouses, who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ir marital conflicts seemed to result from their lack of information about each other due to the short-term courtship, from the marital inequality based on the wives' lower economic status, and from the mother-in-law's interference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Korean men showed ambivalent feelings about their wive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ey wanted their wives to learn Korean culture but worried that their young and educated wife might leave them, which could be called as "the fairy and woodman syndrome." The exploratory view of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t psycho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marital conflicts, and suggests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주제어(Key Words): 국제결혼(intermarriage), 부부갈등(marital conflicts)

Corresponding Author: Sungeun Yang,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sun University, 375 Seousuk-dong, Dong-gu, Gwangju, Korea Tel: 82-62-230-6784 E-mail: seyang@chosun.ac.kr

1. 서 론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 맺어지는 “국제결혼 10% 시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의 결혼은 25,658건으로 전체결혼의 8.4%에 달했으며, 2004년에는 1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이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만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총 102,168명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5%로 나타난다. 특히 그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1990년에 619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9,214명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한겨레, 2005. 2. 2.). 2003년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선두로 베트남과 필리핀여성들이 뒤를 잇는다(조선일보, 2005. 3. 21.). 이러한 국제결혼은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확산되어 농촌에서 외국인아내가 있는 가족이 더 이상 신기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1900년대 초 근대 유학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6.25 전쟁 직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미국 참전군인과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대표적이다(유칠인, 1994).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은 충산층 여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것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연변 조선족과 한국의 인적교류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이다(김은실, 2002). 농촌남성의 배우자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한국 정부는 1990년부터 적극적으로 “연변녀, 농촌총각 짹짓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로 외모에서 차이가 없는 조선족 여성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다가 결혼할 연변동포의 수가 줄면서, 1998년 이후에는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으로선회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에 초점을 두었기에 필리핀 이주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남아 국가들 중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있고, 종교적으로 구속이 거의 없는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인력수출정책을 펴왔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세계이민백서2005”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과 인도의 뒤를 이어 이민송출국 세계 3위 국가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이민자들이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 비율은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한다(조선일보, 2005. 6. 23.). 필리핀여성들은 이주노동자로서 또는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 등의 형태로 한국, 일본, 유럽, 호주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필리핀정부의 인력수출정책과 함께 필

리핀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선호를 고려할 때, 앞으로 필리핀여성의 국내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남성의 필리핀여성 선호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족본부) 등 종교단체에서 이들의 결혼을 집중적으로 주선함으로써(이수자, 2004) 필리핀여성에 대한 친숙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 또한 필리핀여성들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와 함께 영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자녀의 영어교육을 생각해서 이들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필리핀여성이 순정적이고 시부모를 잘 모신다는 결혼알선업체의 광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결혼가족 내의 갈등과 이로 인한 폭력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토론회가 2004년 10월에 개최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05년 2월에 법인체 등록을 마침으로써, 부부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가족학계의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과정과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기술(記述)하고자 한다. 이는 현상에 대한 탐색과 기술이 이론을 적용한 설명보다 선행되어야한다는 귀납적 연구논리에 따른 것이며,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이라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창출하고자 함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연주의 탐구(naturalistic inquiry)의 인식틀에 입각하여 질적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연주의 탐구는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역동적인 연구과정 전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경험의 개인차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Bryman, 1988). 한편, Yin(2003: 3)은 사례연구의 목적을 특정 사례에 대해 탐색하고(exploratory), 기술하며(descriptive), 이론적으로 설명하는(explanatory) 데 있다고 보았다. 필리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부부에 대한 기존 이론의 부재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이들의 부부갈등 과정과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소기(所期)의 목적을 둔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광주YWCA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이주여성과 이들의 배우자들이다.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의 참여는 가정폭력 때문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내와 화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 시설에 내방하면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 부부들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국제결혼부부에 비해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전체 연구참여자는 모두 38명이며, 필리핀 이주여성 19명과 이들의 한국인 남편 19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징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

번호	성명	연령	직업	학력	시부모동거	결혼년도	자녀수
가족1	알리사 이○○	27세 33세	가사 농업	고졸 초졸	동 거	2000년	1명
가족2	줄리아 나○○	26세 31세	가사 무직	대졸 무학	동 거	1998년	3명
가족3	루시 김○○	30세 37세	강사 일용직	대졸 초졸	동 거	1996년	3명
가족4	메리 정○○	31세 40세	가사 일용직	고졸 초졸	비동거	2000년	2명
가족5	수잔 강○○	35세 37세	가사 농업	고졸 초졸	동 거	2001년	1명
가족6	자넷 김○○	30세 40세	가사 자영업	대졸 대졸	비동거	2000년	2명
가족7	안나 오○○	40세 43세	가사 무직	고졸 고졸	동 거	2000년	2명
가족8	마리아 전○○	27세 40세	가사 농업	고졸 초졸	동 거	2000년	2명
가족9	셀리 김○○	23세 33세	가사 무직	고졸 초졸	비동거	2003년	무
가족10	케렌 이○○	26세 43세	가사 공장	전문대졸 고졸	비동거	2003년	무
가족11	제니퍼 최○○	27세 42세	가사 농업	고졸 초졸	비동거	2003년	무
가족12	에밀리 박○○	25세 34세	가사 농업	대중퇴 초졸	동 거	2000년	2명
가족13	제시카 박○○	38세 46세	가사 농업	대졸 초졸	동 거	2000년	무
가족14	나탈리 정○○	35세 37세	가사 농업	고졸 초졸	동 거	1995년	3명
가족15	로렌 신○○	29세 38세	공장 무직	고졸 중졸	비동거	2000년	1명
가족16	사라 배○○	26세 40세	가사 공장	고졸 고졸	동 거	2002년	1명
가족17	로즈 오○○	25세 41세	가사 일용직	대졸 고졸	비동거	2003년	1명
가족18	제인 최○○	31세 36세	가사 공장	고졸 초졸	동 거	2000년	1명
가족19	아만다 권○○	23세 36세	가사 일용직	대중퇴 고졸	동 거	2003년	1명

다. 필리핀여성의 연령은 20대가 11명, 30대가 7명, 40대가 1명이었고, 배우자는 30대가 10명이고, 나머지 9명은 40대였다. 부부의 연령차이가 5년 이하인 경우가 5쌍, 6~10년인 경우가 8쌍, 11~15년인 경우가 4쌍, 16~20년인 경우가 2쌍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대학교 졸업이 5명, 대학교 중퇴가 2명, 전문대학 졸업이 1명이었다. 반면, 남성 배우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명, 고등학교 졸업이 5명, 중학교 졸업이 1명, 초등학교 졸업이 11명, 무학이 1명이었다. 요약해보면, 이들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는 9.1세로 한국남성이 연장자인데 반해 평균 교육수준은 필리핀아내가 더 높았다.

이주여성들은 전업주부이지만 비정규적으로 농사나 식당 일을 도와 일당을 받기도 한다. 남성 배우자의 직업은 농업 7명, 일용직 4명, 공장근무 3명, 자영업 1명, 그리고 무직 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들 중 초혼인 경우가 17명이었고 재혼이 2명이었으며, 남성들은 초혼이 13명이고 재혼이 6명이었다. 전체 19쌍의 부부 중 12쌍이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기관 입소 시점에서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이 12명이었으나, 이중 한국 국적취득자는 6명에 불과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YWCA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필리핀 이주여성들과의 라포(rapport)형성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보호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신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가족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이 정서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필리핀 이주여성들과의 개별면접은 시설 내의 상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사례마다 약 60~100분이 소요되었다. 필리핀여성들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주교광주대교구』소속 외국인 노동자 사목을 하고 있는 수녀의 통역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면접은 부부조정을 위해 보호시설에 내방을 권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개별면접은 Holstein과 Gubrium(1995)의 주장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라는 가정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면접과 본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들을 정교화 하였으며, 필리핀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데

주력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표출된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필리핀여성들의 결혼경로, 배우자 및 시댁식구와의 관계, 자녀 양육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적응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개별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Yin(2003: 114)이 제시한 사례기술전략(case description strategy)에 따라 분석되었다. 본 사례연구의 단위는 필리핀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초점이 필리핀 이주여성과 한국남편의 부부갈등에 있지만,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및 시부모관계가 핵심적 요소로 등장함으로써 사례연구의 단위로 “가족”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각의 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에 관련된 주요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주제를 범주화하기 위해 획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외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례에도 주목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높이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적절성 평가

본 연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의 인식론적 바탕인 자연주의 사회과학의 평가준거를 적용하였다. Stewart(1998: 14-17)는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준거로서 실증주의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타당도를 정확성으로(from validity to veracity), 신뢰도를 객관성으로(from reliability to objectivity), 일반화가능성을 통찰성으로(from generalizability to perspicacity) 대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사례연구의 정확성, 객관성, 통찰성을 획득하기 위해 Stewart(1998: 18)가 제시한대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개입, 잠정적 가설을 재점검하기 위한 역사례찾기,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반성적 일지쓰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료수집과정에서 보여준 솔직함과 개방성도 연구의 적절성을 놓이는데 기여하였다. 연구참여자 부부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광주YWCA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에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필리핀 이주여성과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갈등은 결혼 성사단계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된 부부관계에서 출발한다. 연구에 참여한 한국남성들은 필리핀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적 취득을 연기(延期)하며,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한편 필리핀아내는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며, 이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한국남편과 충돌을 야기한다. 고부관계 역시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다음의 각 쟁점은 탐색적 사례기술 전략에 따라 도출된 중심주제를 기술한 것이다.

1. 불평등한 결혼관계의 시작:

“내가 너를 얼마나 데려왔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부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의 결혼이 상호간의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한국남성이 결혼과정에 드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 후 필리핀여성의 친정에 경제적 원조를 하리라는 합의가 공공연히 또는 암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혼방식은 남성에게 자신이 구매자(購買子)라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을 높이며, 부부관계의 권력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지는 불평등을 전제로 결혼생활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다음은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단기간의 구애기간을 거쳐 이루어진 결혼의 대표적 사례이다. 남성의 경제력은 필리핀여성이 결혼하게 되는 동기인 동시에 아내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저는 언니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필리핀으로 와서 한달 가량 있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가면서 여권을 만들라고 5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여권을 만들고 한달이 지난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친정 여동생에게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 소개비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남편은 초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혼한 사람이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를 얼마나 데리고 왔는데”라고 하며, 결혼할 때 쓴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결핏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도 합니다. (사례 여, #1)

특히,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설 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애기간의 단기화, 배우자 상호간의 정보 왜곡, 한국남성의 결혼비용 부담은 보다 가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외교통상부와 필리핀 현지관청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별적 만남 보다는 현지 브로커를 끊 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되도록 많은 혼인을 성사시켜야 하는 결혼중개업체의 영리적 속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남성에게 미혼모나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필리핀여성을 소개하기도 하며, 반대로 필리핀여성에게 한국남성의 결혼경력을 숨기고 소개하기도 한다. 결혼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부부간의 갈등이 초래된다.

사설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필리핀 현지에 온 한국남성과 맞선을 본 즉시로 결정되거나 혹은 2-3일 안에 결정된다. 결혼을 결정한 두 사람이 필리핀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며, 현지 중개업자의 스케줄에 좌우된다. 결혼이 결정되면 필리핀여성들은 곧 법적인 수속을 밟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 평균 결혼비용은 약 1,200만원 정도이며, 이중에 20% 정도는 현지 브로커들에게 지불된다(한겨레, 2004. 9. 27.).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남성들은 결혼에 드는 비용, 즉 주선기관 가입비, 비행경비, 필리핀 체류비, 아내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선물비용, 예식 비용 등을 부채로 해결했다고 토로하였다. 남성이 지불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는 어려워진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사례이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남편이 결혼브로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았어요. 남편은 중개료를 다 주지 못해서 빚으로 남아 있고, 항상 돈이 없다고 해요. (사례 여, #10)

2. 통제수단으로서 국적취득 연기:

“왜 이 여자만 국적취득을 원하는지...”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은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남편의 인지도 대한민국 국적취득 자격이 생긴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국적취득 이전까지 이주여성은 혼인으로 인한 거주비자(F-2-1)를 통해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다. 일년마다 간신해야하는 비자는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만 하며, 결혼 후 2년이 지나 취득 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인지해야만 가능하다. 남편이 비자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 여성들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행 국적취득 절차는 한국남편으로 하여금 외국인아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하며, 일부 남성들은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적취득절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남편들은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을 할까봐 미루기도 한다(내일신문, 2005. 2. 15.).

본 연구에 참여한 필리핀여성들은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의 학대를 받고 보호시설에 머무르면서도, 국적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필리핀으로 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남편들은 아내의 국적취득을 꺼리거나 또는 국적취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지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마음도 없고, 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읍내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많아. 모두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왜 이 여자만 국적취득을 원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사례 남, #8)

아내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 머리가 아파. 그냥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데 왜 그걸 받아야 하는지... 여자가 고집이 세서 계속 국적인지, 뭐인지 해 주라고 난립니다. (사례 남, #2)

3. 문화적 적응에 대한 양가감정:

“남편이 한국어 공부를 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국제결혼부부는 상대방의 언어, 사회적 규범,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들도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오해와 충돌을 호소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는 국제결혼부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다(광주여성의 전화, 2004).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대부분 제한된 몇몇 단어와 몸짓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필리핀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며, 특히 한글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남편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게 해주고, 매주 일요일에는 성당미사에 참석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미사가 끝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반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여, #6)

문제는 한글이나 한국의 규범, 가치관, 전통 등을 배우고자 하는 필리핀여성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한글교육을 하는 곳은 성당, 교회, 농촌지도소 등으로 주로 읍·면소재지에 있다. 필리핀여성들이 교육장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는 이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여성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들이 아내의 문화적 적응에 보이는 양가적 감정에 기인한다.

연구에 참여한 남편들은 “여자가 한국에 시집왔으니 당연히 한국어와 한국음식을 배워야한다”고 기대하며,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필리핀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아내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면 가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습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한다. 아내의 한글교육에 적극적이

지 않고 시간 할애를 꺼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아내가 한글을 익히면 자신을 무시할지 모른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아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자주 외출을 하면 외부의 영향으로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믿거나 일자리를 찾아 기출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남성들의 태도는 아내를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시도로 표현된다.

4.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아내는 돈을 필리핀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한국남성들과 결혼한다(전남도청 여성정책과, 2003). 이들은 한국남성과의 결혼으로 경제적 풍요와 함께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리라 기대한다. 이는 결혼 성사 단계부터 공공연히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된 사항이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 대부분은 일용직근로자이거나 또는 부모님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비를 타서 쓰는 입장이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남편이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한 필리핀여성들은 남편이 경제력이 없거나 또는 시댁의 눈치 때문에 본국의 가족을 돋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라도 돈을 벌어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내가 친정 대신 시댁식구에게 혼신해야한다고 믿는 한국남성들은 아내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까봐 의심하고 감시하며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는 한국남성과 남편이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필리핀여성 사이의 부부갈등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남편은 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임신을 하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저한테도 용돈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례 여, #7)

이 여자는 오로지 나한테서 돈을 빼돌릴 연구만 해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 여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결혼경비하고 해서 카드빚이 2,000만원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필리핀에 한달에 100불씩 보냈지요. 간간이 150불이나 250불을 보낸 적도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보내지 않죠. 이 여자는 돈을 탈 때만 아양을 떨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필리핀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둘째아이도 키울 능력이 없어요... 절핏하면 가출하는 이 여자와 이혼하고 당장 필리핀으로 쫓아 버릴겁니다.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어디 고아원에 맡길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사례 남, #4)

5. 고부관계의 갈등: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해요”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부부 19쌍 중 12쌍이 시부모와 동

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쌍의 부부는 시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비동거하는 7쌍의 부부도 시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이 높아, 평균적으로 하루 1회 이상 대면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필리핀여성과의 고부갈등은 근본적으로 가족관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구참여자 남편들이 가부장적 확대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본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정의하는데 반해, 필리핀여성들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관이 강하기 때문에 시댁식구들의 개입이나 남편이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한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모든 면접사례에서 필리핀여성들은 분가(分家)를 요구하였다.

한편, 아들의 만혼으로 지금까지 혼자 살림을 담당해온 시어머니는 외국에서 온 머느리가 음식, 빨래, 청소, 농사일 등을 도맡음으로써 가사일에서 해방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필리핀여성들은 자국이 강한 한국음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요리를 쉽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식생활을 책임지게 된다. 결국 시어머니는 머느리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이들이 한국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간식을 즐겨 먹는 것을 보고 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하게 된다. 타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 없이 가족의례를 비롯하여 음식이나 한글 등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는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 온 머느리”라는 멸시와 맞물린다. 두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는 기본적 태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은 이주여성에 대한 시부모나 시집식구들의 차별을 일상화 시킨다. 다음은 필리핀여성과 시부모와의 갈등을 표현하는 인용문이다.

지난번에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화를 막 내면서, “너 혼자 나가! 넌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우리가 우유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 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만 듣고 나를 무시해요. 시누이는 “한국에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필리핀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늘과 땅”은 아니라고 해줬지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남편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이기 때문”에요. (사례 여, #18)

특히 필리핀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자녀양육에 관한 것이다. 필리핀여성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남편의 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필리핀여성들은 가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향이 높다. 맞선을 보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는 등(시사매거진 2580, 2003. 12. 7.) 자녀재생산이 국제결혼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댁식구들은 머느리의 가출보다 손자녀를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분노한다.

자녀의 주양육자가 본인이라고 믿는 필리핀며느리와 손자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국시어머니와의 충돌은 부부관계의 갈등 수준을 높인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출산 며칠 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간섭하고 감시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고집세다고 야단쳤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모유를 먹이는 것을 감시했고, 모유는 3~4시간 안에 10~15분씩 먹여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나는 아이 엄마예요! 언제 아이가 배고픈지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례 여, #16)

IV. 논의점

본 연구는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족에 주목하여 『광주YWCA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필리핀 이주여성과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갈등을 고찰하였다.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갈등은 국제결혼의 성사 과정이 지난 구조적 취약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의 결혼은 사설중개업자나 종교단체 또는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이루어지는데,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극히 짧으며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여성 대부분은 부모와 형제의 생계지원 의무를 지며, 자국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한국으로 시집와서 본국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 배우자 간에 상이한 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은 결혼 후 낯선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내의 적응에 대해 남편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으며 일종의 “선녀와 나무꾼¹⁾ 신드롬”을 보인다. 즉, 아내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고학력이고 젊은 아내가 한국사회에 익숙해지면 가출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은 아내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배우자로 인지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일다, 2004. 11. 29.).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국적취득절차를 미룸으로써 체류신분상의 제약을 받으며, 가족내에서 의사결정권이나 경제권을 갖지 못한다. 부부권력의 불균형과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은 부부갈등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이 두려워 결혼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삼각관계에서 형성된 고부갈등은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국제결혼가족이 부부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 보다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희망자들이 상호간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이 지난 매매혼(賣買婚)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이들이 결혼 전에 서로의 기대치를 털색하고, 이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쳐 일종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개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후에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근원이 됨을 주지해야 한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은 완전자유업으로서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규제수단이 없다. 다행히 국제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법적제도를 바탕으로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적취득 절차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외국인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2004년 국적법 개정 이후 이주여성의 인권보장 차원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현행 국적법 체계는 위장결혼을 선별하겠다는 목적 하에 국적취득절차를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주여성의 종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우리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제결혼을 허용하는 한 국가는 이주여성과 국제결혼가족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프랑스 국적법이나 결혼만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스위스 국적법 등을 검토하여, 이주여성의 법적신분보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함께 자국민우선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이 상대방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전체, 특히 부부와 시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혼초기부터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과업 수행, 부부

1)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나무꾼이 사슴의 보은으로 맷게 된 선녀와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선녀를 아내로 맞은 나무꾼은 선녀가 승천하지 못하도록 3명의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날개옷을 감추라는 사슴의 충고를 듣는다. 그러나 나무꾼은 이 충고를 어기게 되고, 선녀는 남편을 버리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승천한다.

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전략, 국제결혼가족이 겪는 독특한 스트레스 등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운영과 함께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국어교실”을 중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사회규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 상식, 가정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위주에서 벗어나 전문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이주여성들의 지리적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장은 이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도모하여 자연스럽게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조집단은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사 및 육아로 인해 외부와 고립되거나 쉬운 이주여성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처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이 발생하면 배우자 양쪽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이 있는 상담원과 연계하여 가족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은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움 뿐 아니라 외국인아내를 둔 한국남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야한다. 한국여성을 배우자로 찾지 못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결혼 자체에 양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자, 2004). 한편에서는 한국여성을 배우자로 삼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과 또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외국여성의 신비감과 성적매력을 취득한 자부심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남성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갈등이 심화되어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여성긴급상담전화1366”이나 외국인여성보호시설 등의 확충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필리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부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자연주의 탐구의 관점에서 이들의 부부갈등 과정과 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이라는 위기에 처한 부부들로서, 이러한 극단적 상황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결혼부부의 갈등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놓인 위기상황을 모든 국제결혼부부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님을 주지하는 바이다. 국제결혼부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과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광주여성의전화(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보고서.
- 김은실(2002). 국민국가, 지구화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200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회의 “근대성을 넘어, 민족을 넘어” 발표논문.
- 내일신문(2005. 2. 15.). 집중점검: 팔려온 신부, 국제결혼여성.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전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시사매거진 2580(2003. 12. 7.). 베트남 국제결혼: 속전속결 5박6일.
- 오마이뉴스(2004. 6. 24.). 길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의 삶.
- 유철인(1994). 여성사회학: 생애 이야기에 나타난 “국제결혼여성”的 삶. 1994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91-298.
-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흔성 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일다(2004. 11. 29.). 이주여성 “국적취득 위해 학대 참는다.” 전남도청 여성정책과(2003). 전라남도내 외국인주부 한국문화적응교육 보고서.
- 조선일보(2005. 3. 21.). 국제결혼 10% 시대: 팔려온 신부들이 울고 있다.
- 조선일보(2005. 3. 22.). 사설: 국제결혼에 비친 우리의 못난 자화상.
- 조선일보(2005. 6. 23.). 세계인구 35명중 1명 이민자.
- 한겨레신문(2004. 9. 27.). 국제결혼 알선 소비자 피해 급증.
- 한겨레신문(2004. 11. 8.). 농촌의 코시안, 한글교육·자녀 상담 상설기관 절실.
- 한겨레신문(2005. 2. 2.). 이주여성인권센터 4년 만에 법인 등록.
- Bryman, A. (1988).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New England: Routledge.
- Holstein, J. A., & Gubrium,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tewart, A. (1998). *The ethnographer's metho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2005년 6월 27일 접수, 2005년 12월 12일 채택)